

교수 연구년제 시행 규정

제정 1997. 07. 02.
제24차 개정 2022. 04.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년이라 함은 본교에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이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학술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연구교원이라 함은 총장의 명에 의하거나 본인이 연구년을 신청하여 총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8.07.27.)

제3조(연구년의 기간) ① 연구년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승인된 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연구년의 개시는 매년 2월 1일 또는 8월 1일로 한다. (개정 2013.8.13)

제4조(연구교원의 자격) ① 연구교원은 본교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연구실적이 탁월하고 교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일반교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임상교원은 진료 공백에 따른 수익보전방안 확정 후 한방병원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2.22, 2005.8.30., 2007.10.29., 2018.07.27.)

② 연구년은 근무6년 단위로 재차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이하의 연구년을 종료한 교원은 4년 이내에 6월 이하의 연구년을 재차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과 통폐합에 따른 전공학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30)

③ 제2항의 단서 조항의 경우, 근무년수는 직전 연구년 종료시점부터 기산한다.
(조개정 2000.9.21) (조개정 2003.8.29)

제5조(연구기관의 지정) 연구년 기간의 연구는 연구교원 소속대학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인정한다.

1. 해당분야의 박사과정 또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국내·외의 대학
2. 국가기관에 등록된 국내·외의 공인연구소

제6조(신청절차) 연구년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년 개시 6개월 이전에 소속 학과장과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1, 2005.8.30, 2007.10.29, 2008.11.12., 2013.8.13., 2018.07.27., 2019.06.25., 2022.04.20)

1. 연구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연구년중의 연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학술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임상교원의 경우 한방병원 허가서 (호 신설 2007.10.29)

제7조(연구교원의 선정 및 인원) 연구교원은 학술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하고, 인원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8조(선정절차) ① **교무연구처장**은 연구년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때에는 자체 없이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0., 2007.10.29., 2019.06.25,

2022.04.20)

② 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무연구처장**은 확정된 사항을 연구년 개시 6개월 전까지 연구년 신청교원 및 소속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1, 2005.8.30, 2007.10.29., 2008.11.12., 2018.07.27., 2019.06.25, 2022.04.20)

제9조(선정기준) 연구교원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학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3.8.13)

1. 연구년의 부여 횟수
2. 본교에서 재직한 년수(기 시행한 연구년 종료 후 재직년수)
(개정 2008.11.12)
3. 호 삭제 (2009.4.9)
4. 호 삭제 (2008.11.12)
5.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
6. 삭제 (2007.2.26)
7. 6년간 연구실적(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이 300점 이상 (단, 교무위원, 법
인국장, 한방병원장과 병가자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을 적용하며, 연구실
적은 1년 단위 50점을 기준으로 한다.) (호 신설 2007.2.26, 2009.4.9)

제10조(연구교원의 처우) ① 연구교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보수규정 제42조에 의한다. 단, 학교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처우 외에 연구교원의 동의에 따라 대체강사료 등 일부를 연구교원에게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8.07.27.)

② 개정 (2000.10.24, 2004.8.25, 2005.8.30) 항 삭제 (2006.01.04)

③ 연구교원은 전임교원으로서 신분보장을 받으며 연구비 신청, 승진, 승급 및 기타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연구교원의 의무) ① 연구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즉시 복직하여야 한다.

② 연구교원은 연구년 중의 연구실적물 제출과 관련하여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년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학술지 및 국제전문학술지 이상 수준에 논문을 책임연구자(단독, 제1저자, 교
신저자)로서 게재하고 연구년 연구실적물 발표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무·연
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1, 2000.10.24, 2004.8.25, 2005.8.30,
2006.1.4, 2007.10.29, 2015.05.12., 2019.06.25)

③ 연구교원은 국내 타 대학에 출강하거나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연구교원은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연구년 기간의 3배수 이상 본교에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정계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4)

⑤ 연구교원이 ①항, ②항, ③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후 교수 연구년제 및 교내연구비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6.1.4, 2008.11.12)

⑥ 연구년 교원은 교내 보직을 맡을 수 없다. 다만,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각종 위원회 위원 및 대학부설연구소의 보직은 맡을 수 있다. (신설 2008.11.12)

⑦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의 의무기간에 미달하는 비율만큼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된 봉급을 회수한다. (신설 2010.1.4)

제12조(제한) ① 연구년 교원의 허가인원은 일반교원 총수의 14% 이하로 제한한다. (신
설 2008.11.12.) (개정 2018.07.27.)

② 연구교원의 수는 휴직교원, 교환교수,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비·국비 해외

파견 교원의 수를 포함하여 소속학과 재적교원의 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적교원이 4명 미만인 학과는 연수교원 및 연구교원을 합하여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과 통폐합에 따른 전공학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속학과 재적교원 수의 1/2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8.30) (항 변경 2008.11.12)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연구교원이 될 수 없다. (항 변경 2008.11.12)

1. 삭제 (2003.8.29)

2. 징계를 받은 교원으로서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교원

3. 삭제 (2006.2.27)

4.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연구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학기 이내)에 정년에 달하는 교원 (개정 2018.07.27.)

5. 연수종료 후 연수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지 않은 교원 (신설 2003.8.29)

6. 징계중인 자 및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호 신설 2013.8.13)

7. 연구년 및 해외 파견 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 하는 자 (호 신설 2013.8.13)

④ 연구년이 종료되고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연구실적물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교원은 학술 연구 활동지원 장려금 지급을 제한 한다. (항 신설 2013.8.13)

제13조(휴직과의 관계) ①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휴직중인 교원은 연구교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강의의 대체) 연구교원이 담당하던 교과목의 강의는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강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03.8.29)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첫해에 한하여 제6조(신청절차)의 신청서 제출기한을 4개월 이전까지로, 제8조(선정절차) 제3항의 통보기한을 2개월 이전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첫해에 한하여 제6조(신청절차)의 신청서 제출기한을 3월이 전까지로, 제8조(선정절차) 제3항의 통보기한을 2월 이전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점) 제11조제2항의 변경된 연구실적물 계재학술지는 2004학년도 후반기 연구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033, 2004. 12. 22)

이 규정은 200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915, 2005. 8. 30)

이 규정은 200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0, 2006.01.04)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점) 이 규정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1조 제5항은 2006학년도 전반기 교수연구년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213, 2006. 2. 27)

이 규정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92, 2007. 02. 26)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9조 제7호의 규정은 2009학년도 전반기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133, 2007. 10. 30)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221, 2008. 11. 12)

- ①이 규정은 200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6조 및 제8조 ③항은 2010학년도 전반기 대상 교원부터 적용하며, 제9조 제11조 ⑥항 제12조 ①항은 2009학년도 후반기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455, 2009.04.09))

이 규정은 2009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8, 2010. 01. 11)

- ① 이 규정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1조 7항은 2010학년도 전반기 연구년 시행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460, 2013.8.13)

- ① 이 규정은 2013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조 ③항은 2014학년도 후반기 연구년 시행자부터 적용한다.
- ③ (적용시점) 제12조 ④항의 학술연구 활동지원 장려금 지급 제한은 2013년 09월 01일 접수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48, 2013.10.10)

- ①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조 ③항은 2014학년도 후반기 연구년 시행자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개정 당시 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과 관련하여 1월의 부족한 근무년수를 최초 1회에 한하여 6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예산부-294, 2015.05.12)

- ① 이 규정은 2015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11조 제2항은 결과물 미제출자에 대하여 소급적용 할 수 있다.

부칙 (기획예산부-395, 2018.07.27)

이 규정은 2018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57, 2022.04.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2009. 04. 09)

연 구 년 신 청 서

대 학			학 과	
직 급			성 명	
연구 과제명	(국문) (영문)			
연 구 기 관	교 내 () 해 외 ()	() 대학		
연 구 간	20 년 ()	200 200	.	부터 까지 () 개월

위 본인은 교수 연구년제 시행 규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연구년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연구계획서 1부.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 신청자는 본 대학 및 학과의 학사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고 학술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연구년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전공주임교수(학과장) (인)
학 장 (직인)

상 지 대 학 교 총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변경 2009. 04. 09)

연 구 계 획 서

연 구 과 제 명	(국한문) (영 문)				
연 구 책 임 자			연구기관		
연구기간	부터 까지				
연 구 책 임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최 종 출 신 교	학 위	비 고
공 동 연 구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최 종 출 신 교	학 위	비 고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최종출신교 (재학교)	학 위	비 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4.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기타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연 구 년 결 과 보 고 서

소 속	학 부(군)			
	직 급			
	성 명			
연구과제명 (국한문) (영문)				
연구년기간	· · 부터 · · 까지	연구기관		
연구결과개요				
연구결과 활용방안				
상 지 대 학 교 총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연구년 연구실적 물발표보고서

결	계	주 임	과 장	처 장	부총장	총 장
재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연구과제명 (국한문) (영문)			
1. 발표논문명 (또는 저서명)	공동연구자명	제 재 지 명	발행일
내용요약			
붙 임 : 별쇄본 1부.			
2. 발표논문명 (또는 저서명)	공동연구자명	제 재 지 명	발행일
내용요약			
붙 임 : 별쇄본 1부.			
3. 발표 논문명 (또는 저서명)	공동연구자명	제 재 지 명	발행일
내용요약			
붙 임 : 별쇄본 1부.			
<u>상지대학교 총장 귀하</u>			